



일본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 추진

2009년 9월, 54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역사를 만들어낸 일본 민주당. 수장인 하토야마 총리는 이 정권교체 이후 최초의 공식적 국제회의인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해 “(일본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줄이겠다.”는 선언을 강한 어조로 발표하며 국제사회로부터 큰 박수를 받은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는 이 ‘25%’라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담은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이 2012년까지의 제정을 목표로 국회 심의에 들어간 상태이다(2010년 내 심의 미완료로 2011년으로 순연됨).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경제 단체, 산업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이 법안의 제정과 발효까지의 길은 순탄치 못할 것이 예상된다. 이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과 관련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관심에 쏠리는 부분이 ‘환경세’라고 한다면, 어쩌면 기업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국내배출권거래제도’라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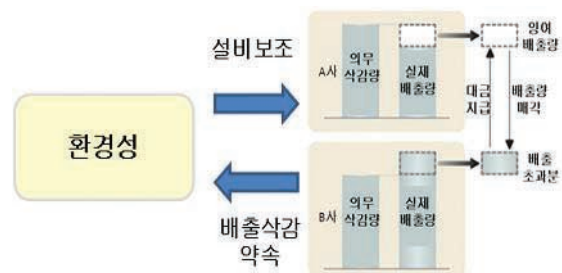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강제성이 없는 자주참가형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JVETS)를 운영하여 참가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달성 시 기업에게 크레딧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전국적인 강제적인 국내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거래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애당초 달성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되었던 2020년 25% 삭감 목표. 앞으로의 10년간, 일본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때로 보인다.

일본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로드맵



기 도입된 배출량 관련 제도들

자주참가형국내배출권거래제도(JVETS, Japan's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 : 2005년부터 환경성에서 도입한 제도로 ① 온실가스 배출량삭감 설비에 대한 설비보조, ② 일정량의 배출량 삭감 약속, ③ 유연성 조치가 있는 배출량 거래를 통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삭감에 노력하려는 사업자를 지원하여 확실하면서도 비용대비 효과가 뛰어난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효과를 실현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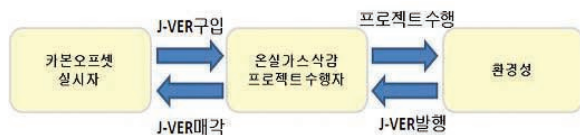
국내크레딧제도 : 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에 의거하여 규정된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자금, 혹은 기술을 제공받아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삭감분은 공식적인 인정절차를 거쳐 매각할 수 있게 되는 제도이다. 아울러 여기서 말하는 온실가스 배출 삭감사업이란 설비갱신 또는 설비도입 등으로 통해 온실가스 삭감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일러의 갱신이나 조명에



대한 LED로의 변경, 태양광설비 도입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시행배출량 거래 스킴 : 시행배출량 거래 스킴은 '배출량거래의 국내통합 시장의 시행적 실시' 상의 축이 될 구조로, 참가자가 자주적으로 배출삭감목표를 설정한 후, 스스로 삭감 노력을 투자하여 달성시키기 위해 배출한도·크레딧의 거래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스킴(scheme, 제도)의 목적은 배출총량목표나 단위 목표의 선택 등 각종 옵션을 시행하여 급적 많은 기업들의 참가를 유도하여 일본의 산업에 적합한 모델을 검토하는 것이다.

오프셋크레딧 제도(J-VER, Verified Emission Reduction) : 기업이 상품을 제조 할 때 배출하게 되는 온실가스를 다른 장소에서 온실가스 삭감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배출량을 상쇄시키는 것을 카본 오프셋(Carbon Offset)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온실가스 배출을 삭감하거나 또는 흡수한 사업에 대해 크레딧을 발급하여 유통시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오프셋크레딧 제도라 할 수 있다.



도쿄도 캡앤티트레이드제도 : 도쿄도 소재 기업들 중 일부에게 올 4월부터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가 의무화된 바 있다. 의무 삭감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는 연료나 열, 전기의 사용량이 원유로 환산해 연간 1,500킬로리터 이상이 되는 공장이나 사무소, 상업·숙박시설 등이다. 단순히 사업소의 수만 따질 때는 전체의 1%도 채 안되나,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은 도내 업무·산업부문의 약 40%에 해당된다. 올해 의무부여가 된 기업 1개사 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반가정의 약3,300배에 해당될 정도라고 한다.

2013년 국내배출량거래제도를 향한 환경성의 움직임

일본 환경성의 소위원회를 통한 배출량거래제도에 대한 검토 목적은 상당히 명확한데, 현재 이 제도의 골자가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상태이다. 아래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과 제도의 유형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성의 배출량거래제도 검토 목적은 캡앤티트레이드(Cap & Trade)형 국내배출량거래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이 캡(배출 할당량)의 대상이 될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이 몇 톤 이상인가가 쟁점이 되겠는데, 1) 전 산업에 대한 일률규제일지 혹은 대상산업을 선별할지, 2) 적용단위가 사업소단위일지 또는 기업단위일지에 따라서도 기업 활동 및 일본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5년부터 EU에서 시작된 EU배출량거래제도의 경우 시작부터 전력설비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직접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본의 경우도 전력업계는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사업자인 만큼 직접규제를 실시할 경우 배출량 삭감효과는 큰 반면, 간접규제를 실시할 경우 기업이나 가정 등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직접규제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올해 국회에 제출된 '지구온난화대응기본법안'에는 배출량거래제도의 창설과 관련된 총량방식을 기초로 하면서도 원단위방식의 검토 또한 언급이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총량방식은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총량에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고, 원단위 방식이란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원단위에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원단위방식의 경우 경기변동의 영향이 커, 경기 호황일 때의 생산량 증가는 고스란히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의 증가로 연결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성 소위원회에는 발전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직/간접 규제와 함께 배출량의 할당방법이나 원단위 방식과 관련하여 3가지 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 옵션A(전력직접방식+총량방식(무상할당))

전기사업자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직접배출하는 자에 대해 총량 방식으로 배출량을 설정

※ 옵션B(전력간접방식+총량방식(무상할당)+전력원단위규제)

전력사업자에게는 배출원단위로 개선을 의무화하며, 전기사업자를 제외한 제도대상자한테는 총량방식(무상)으로 배출량을 설정

※ 옵션C(전력간접방식+원단위방식)

전기사업자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는 자한테 배출원단위의 개선을 의무화하고, 배출량 확정후 사후정산을 통해 초과 삭감량을 교부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 또한 일본내 배출량거래제도에 대한 검토를 행하고 있으나, 경제산업성의 경우는 환경성의 접근법과는 상이해, 배출량거래제도의 도입이 대전제가 되는 것이 아닌 타 제도와의 조화를 통해 최적의 수단을 모색하는 것으로, 양 부처간의 합의가 배출량거래제도의 시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